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표이사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신설〉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39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표이사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30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대표이사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관계수급인에게는 이러한 조치 사항 확인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14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

제171조(벌칙) (생략) <u><신설></u> 1. ~ 4. (생략)	<u>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1. <u>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u>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제171조(벌칙) (현행과 같음) 1. <u>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¹⁾)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²⁾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³⁾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1)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⁵⁾ 의무 위반만으로 대표이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중 처벌 및 법 적용의 혼선 등의 우려가 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4)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